

의안번호	제 35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회)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미애 의원외 7인
발의연월일	2009년 4월 15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3
----------	-----

제출연월일 : 2009. 4. 15.
 제출자 : 최미애, 임현, 김광수,
 이범윤, 이종호, 정윤숙,
 최광옥, 최재옥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법률 조항 개정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균형발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함(안 제3조)
- 상위 관련 법령 근거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조사·실시”를 “**기획, 조사, 실시**”로 한다.

제2조 (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촉 또는”을 “**위촉하거나**”로 하고,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균형발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경우는”을 “**경우에는**”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때에는”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 하고”를 “**구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보고해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간사 및”을 “**간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및”을 “**간사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업무담당사무관”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실비변상 조례”를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각각 “**명**”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 조, 제6조, 제7 조, 제8 조 및 제11 조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u>기획·조사·실시</u>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조 (기능)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u>기획, 조사, 실시</u>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u>위촉 또는</u>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u>위촉하거나</u> 임명하는 자로 하되, <u>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충청북도보건복지여성국장과 균형발전국장은</u></p>

현행	개정안
<p>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u>당해</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기간</u>으로 한다.</p> <p>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u>해촉</u>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u>통할</u>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p>	<p><u>당연직으로 한다.</u></p> <p>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u><삭 제></u></p> <p>제4조(위원의 임기) ① <u>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u>위원</u>의 임기는 <u>해당</u>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기간</u>으로 한다.</p> <p>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u>경우에는</u> 해촉된 것으로 본다.</p> <p>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u>총괄</u>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u>없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u>위원</u>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u>위원회</u>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③ <u>위원회</u>는 재적위원 과반수의</p>

현행	개정안
<p>출석으로 <u>개</u>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소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u>구</u>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u>보</u>고해야 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u>장</u>에인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p> <p>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p>	<p>출석으로 <u>개</u>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u>명</u> 이내로 <u>구</u>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u>보</u>고하<u>여</u>야 한다.</p> <p>제8조(간사<u>와</u>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u>와</u> 서기 각 1<u>명</u>을 둔다.</p> <p>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u>장</u>에인복지<u>업</u>무담당사무관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p> <p>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u>명</u>을 둘 수 있다.</p> <p>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p>

현행	개정안
<p>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u>실비변상 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u>기타</u>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u>각호</u>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u>당해</u>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u>의결</u> 한다.</p>	<p>예산의 <u>범위에서</u>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u>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u>그 밖에</u>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의 제척) ①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u>각 호와</u>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제척되는 경우에는 <u>해당</u>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②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u>의결한다</u>.</p>

관련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